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6. 1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朴 鍾 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5호로 2012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문화
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성인지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계획·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고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전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시행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체계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여성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서울시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 서대문구 외 4개 자치구

관 련 법 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